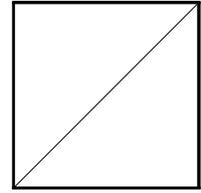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424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12. 22. (제 22 차)	

티오비자산관리대부(주)에 대한  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연월일	2020. 12. 22.

## 1. 의결주문

티오비자산관리대부(주)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티오비자산관리대부(주)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소재지(영업소) 불명의로 확인된 티오비자산관리대부(주)에 대하여 등록취소 조치를 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영업 정지 및 등록취소 등) 제2항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(공고내용 및 방법)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11.19.) 심의필

<별지>

티오비자산관리대부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내용

### 기관에 대한 조치

- 티오비자산관리대부(주) : 등록취소

## 2. 조치사유

### 가. 대부업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지 불명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 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바

티오비자산관리대부(주)는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\*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(2020.8.10.)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(공고만료일, 2020.9.9.)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\*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소재지 영업소 방문결과 소재지 불명사실을 확인

### 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
<붙임 1>

관 계 법 규

□ **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**

**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 ① (생략)**

② 시·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·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

⑥ ~ ⑧ (생략)

**제18조의7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**

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□ **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**

**제8조(공고내용 및 방법)**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·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, 시·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.

□ **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**

**제17조(기관에 대한 제재) ①** 금융위설치법,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영업의 인가·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, 영업·업무의 전부 정지

가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·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·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

나.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 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
다. ~ 라. (생략)

<붙임 2>

## 제재내용 공개안

### 1. 회사명 : 티오비자산관리대부(주)

\* 대표자 : 박분례  
등록번호 : 2018-금감원-1609(대부업)  
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7길 5, 3층

### 2. 제재조치일 : . . . .

### 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 재 내 용
기관	등록취소
임직원	-

### 4. 제재대상사실

#### 가. 문책사항

##### (1) 대부업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지 불명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 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바

티오비자산관리대부(주)는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\*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(2020.8.10.)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(공고만료일, 2020.9.9.)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\*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소재지 영업소 방문결과 소재지 불명사실을 확인

#### 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가계금융과	여신금융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513	02-3145-8267